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5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박해철 · 이용우 · 이재관
이재정 · 한민수 · 박균택
박지원 · 김승원 · 이용선
이광희 · 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용 창출 및 돌봄·환경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기업 정책 관련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수립·시행시 상호소통과 협력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한편, 지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역 단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등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진흥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센터(이하 “성장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성장센터 협의체) ① 진흥원은 제2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관련 협력 및 교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성장센터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성장센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중 “제20조제9항”을 “제20조제10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제20조제12항”을 “제20조제13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⑤ 진흥원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고 려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이하 “성장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⑤ ~ ⑫ (생 략)</u>	<u>⑥ ~ ⑬ (현행 제5항부터 제 12항까지와 같음)</u>
<u><신 설></u>	<u>제20조의2(성장센터 협의체) ① 진흥원은 제2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관련 협력 및 교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성장센터 협의체”라 한다) 를 구축할 수 있다.</u> <u>② 성장센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제22조(벌칙) <u>제20조제9항</u>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u>제20조제12항</u>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생략)	제22조(벌칙) <u>제20조제10항</u>----- ----- ----- -----. 제2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0조제13항</u>----- ----- ----- ③ (현행과 같음)
--	--